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6호 2016년 12월 pp.175~200

한국세무학회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 및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윤** · 박성진*** · 김한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IAASB의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발표를 계기로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대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2개 상장사협의회, 한국회계학회의 회원들 및 학생, 금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인간의 기대차이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의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국내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진과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셋째, 기타정보와 관련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의 작성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의 모니터링(예 : 감사보고서감리, 품질관리감리)의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감사인의 자유선임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계약방식(예 :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인지정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절차는 소극적 확신을 기초로 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소극적 확신에서 적극적 확신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12월 결산법인을 제도적 유인(예를 들어, 세액공제)을 통해 결산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핵심감사항목을 별도문단으로 표시하는 장문식 감사보고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제감사보고기준, 핵심감사항목, 외부감사, 기대차이, 감사품질

* 본 연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위탁받아 수행된 연구보고서(2015)의 일부를 수정 발췌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kyn@ajou.ac.kr, 주저자

***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sungjinpark@sungshin.ac.kr,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kimhansoo@kgu.ac.kr, 공동저자

I. 서 론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와 감사인간 기대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기대차이(expectation gap)’란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Liggio(1974)는 기대차이(expectation gap)를 회계감사에 처음 적용하였는데, 감사인과 재무제표이용자 간에 기대하는 성과수준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대차이를 조사한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Cohen위원회(1978)에 의하면, 실제로 일반대중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과 감사인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캐나다 공인회계사회(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1988)는 기대차이를 기준차이(standard gap)과 실무차이(performance gap)로 구분하였다. 기준차이는 다시 개선된 의사전달이 필요한 ‘비합리적인 차이’와 회계감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합리적 차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실무차이는 다시 감사실무의 품질개선이 필요한 부분(합리적 차이)과 개선된 의사전달이 필요한 부분(비합리적 차이)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재은 등 2015, p.114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대차이는 회계감사를 대하는 정보이용자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예 : 소송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기대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여 선진화된 자본시스템의 조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본의 국제적 자율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의 신뢰도 저하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저해시켜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신뢰도 확보는 산업계 및 학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적 현안(agenda)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키는 기대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회계감사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는 2015년 3월에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을 발표하였다.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을 감사한 업무수행이사의 성명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감사인이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으로 판단한 사항인 주요감사사항(KAM)을 지배기구와 의사소통해야 하며,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의 검토절차와 보고방법을 개정하였다. 넷째, 감사보고서에서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정보(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절차와 보고책임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IAASB의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발표를 계기로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인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 재무제표작성자와 외부감사의 기대차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 170명, 회계정보이용자 161명, 재무제표작성자와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온라인 및 오프라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항목에서 외부감사의 기대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기대차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III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간에 발생하는 기대차이 항목을 파악하며, 제 IV 장에서는 기대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공헌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주인기 등(2005)은 외부감사의 기대차이와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이해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에 높은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곤(2005)은 회계감사의 기대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감사보고서의 개선과 회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신신웅(2004)은 정부감사인인 의견표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는 전문적인 감사지식과 감사경험의 부족을 제거하면 기대차이를 낮출 수 있으며, 감사비용 및 감사시간의 부족을 최소화하면 기대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은과 배길수(2014)는 감사보고서감리가 회계품질을 향상시켰으나, 감독제도와 감리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회계기준의 적용판단, 회계추정의 판단,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 등을 제시하였다.

이민재(2003)는 현행 감사보고서에는 내용이 풍부하지 않아 감사보고서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사인책임을 경감시키고 감사보고서이용자가 감사목적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문기와 송인만(2010)은 회계감사에서 기대와 성과차이의 구성요소로 합리성차이, 규정미비, 실무수행 결함 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Mills and Bettner(1992)는 일반대중과 감사인 간의 인식차이를 기대차이, 서비스범위 차이, 직업 내 경쟁차이, 역할모호성 차이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회계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기대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Lin(2004)은 독립적인 감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Miller et al.(1990)은 SAS 58에 의해 새롭게 변경된 감사보고서가 감사인 및 경영진 책임, 오류적발의 감사인책임, 재무제표 신

뢰성,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감사범위와 테스트 정도, 계속기업가정의 쟁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감사보고서는 감사인과 재무제표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ly and Mohrweis(1989)도 SAS 58의 변경은 재무제표이용자관점에서 감사목적과 재무제표의 경영진책임과 관련된 이해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Hooks(1991)는 경영진의 재무제표작성책임, 감사인의 보고책임, 전문가적 감사판단의 필요성, 중요성기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의미 등에 있어서 일반대중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pstein and Geiger(1994)는 투자자와 재무제표이용자는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감사인이 기대하는 감사보고서의 목적과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Porter(1993)는 감사의 기대차이 중 실무차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일반대중은 감사인과 많은 부분에서 기대차이가 존재하여 감사업무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cEnroe and Martens(2001)은 감사인책임에 대한 감사인과 투자자 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 et al.(1993)은 감사인의 업무는 사후판단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별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결과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Humphrey et al.(1992)은 감사의 성격, 감사인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 등이 기대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Humphrey et al.(1993)은 부정적발과 관련된 감사인책임, 재무상태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속성,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업무의 수행(예 :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감사인 능력 등) 등에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Sikka et al.(1998)은 감사의 기대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재무정보이용자, 투자자, 언론인, 정치인 등 대부분의 정보이용자와 감사인간에 부정 또는 오류와 관련한 기대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edard et al.(2012)은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기대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계정보이용자는 기타정보가 감사대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기타정보와 관련한 감사인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PCAOB는 2011년부터 주요감사사항의 보고기준과 기타정보의 감사인 절차 및 보고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CAOB 2011a ; 2011b). 이재은 등(2015)은 개정국제감사보고기준의 시행에 앞서 국내 감사환경에 미칠 영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국내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감사인 판단과 책임범위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무지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Ⅲ.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의 실태

1. 설문조사방법

설문지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 및 재무제표작성자간의 기대차이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대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자는 감사인이 170명, 회계정보이용자와 재무제표작성자가 각각 161명과 53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상장사협의회(KLCA, KOSDAQ),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회계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회계학회의 회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휴업공인회계사는 회계정보이용자로 분류하였으며, 오프라인의 설문대상자는 학생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 통제를 위해 회계감사를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회계감사를 수강중인 학생만을 설문조사에 참여시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장회사 임직원은 재무제표작성자로 분류하였으며, 회계법인과 감사반 소속의 개업공인회계사는 감사인으로 분류하였다. 회계정보이용자는 회계학 전공교수와 학생,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감사인의 평균경력(년)은 16.9년, 재무제표작성자의 평균경력(년)은 16.5년, 회계정보이용자 중 회계학 전공교수의 평균경력(년)은 16.7년으로 나타났다. 각 설문대상자의 집단별 표본수와 구성비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 집단별 표본수와 구성비

구 분	표본수(명)	평균경력(년)	구성비율(%)
재무제표작성자	53	16.5	13.8
감사인	170	16.9	44.3
회계정보이용자	161	16.7*	41.9
계	384		100.0

* 회계정보이용자 중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의 평균경력임

설문조사는 5점의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며, 답변자가 제시된 문장의 동의여부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측정한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점과 2점이고 ‘보통이다’와 ‘그렇다’는 각각 3점과 4점이다. 한편,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2.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설문조사는 재무제표작성자, 회계정보이용자 및 감사인의 세 집단에 대해 수행하였으나, 기대차이는 주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발생하므로 각 표에서는 세 집단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으나,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기대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회계감사의 한계(Q1-1)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기업에 대한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기업업무를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는 대상이 아니다. 적정의견의 의미에 대한 집단 간의 기대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1의 설문내용〉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건실하며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 2>의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는 0.59로 나타나, 회계정보이용자와 감사인간에 회계감사의 한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의견의 의미에 있어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2〉 Q1-1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1	재무제표작성자	53	3.47	1.103	0.151	3.17	3.78	0.59***
	감사인	170	1.98	1.164	0.089	1.81	2.16	
	회계정보이용자	161	2.57	1.386	0.109	2.35	2.78	
	전체	384	2.43	1.346	0.069	2.30	2.57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 평균차이는 t-검정으로 수행하였음. 이하 모든 표에서 동일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Q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기준에 따르면, 운영실태보고의 감사인 검토는 소극적 확신만을 제공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감사과정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

발·예방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의 집단 간 기대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2의 설문내용〉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감사과정의 일환이고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완벽하게 적발·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표 3>에서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는 0.44로 나타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대한 기대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3〉 Q1-2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2	재무제표작성자	53	3.83	0.995	0.137	3.56	4.10	0.44***
	감사인	170	4.34	0.897	0.069	4.20	4.47	
	회계정보이용자	161	3.90	1.026	0.081	3.74	4.06	
	전체	384	4.08	0.990	0.051	3.98	4.18	

다. 부정의 예방·적발책임(Q1-3)

부정의 예방 및 발견책임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의 수준범위 내에서 재무제표에 부정과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적발책임만을 부담한다. 집단 간 기대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3의 설문내용〉

부정의 예방과 적발책임은 회사 경영진(내부감사 포함)에 있으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만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는 0.67로 나타나 기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의 부정적발책임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와 감사인 간의 기대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Epstein and Geiger(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 Q1-3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3	재무제표작성자	53	3.64	1.094	0.150	3.34	3.94	0.67***
	감사인	170	4.45	0.891	0.068	4.31	4.58	
	회계정보이용자	161	3.78	1.283	0.101	3.58	3.98	
	전체	384	4.06	1.150	0.059	3.94	4.17	

라. 감사보고서 발행 후 감사인의 법적 책임(Q1-4)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다면, 감사보고서 발행 후 감사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법적 책임은 없다. 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Q1-4의 설문내용〉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후 감사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감사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 평균차이는 0.84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인기 등(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가 제공하는 인증수준을 ‘절대적 확신’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대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pstein and Geiger 1994).

〈표 5〉 Q1-4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4	재무제표작성자	53	3.75	0.918	0.126	3.50	4.01	0.84***
	감사인	170	2.74	1.144	0.088	2.56	2.91	
	회계정보이용자	161	3.58	1.064	0.084	3.41	3.74	
	전체	384	3.23	1.167	0.060	3.11	3.35	

마. 계속기업의 불확실성(Q1-5)

국제감사보고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제감사기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5의 설문내용〉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표 6>에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의 평균차이는 0.54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의 언급이 없어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인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6〉 Q1-5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5	재무제표작성자가	53	3.72	0.907	0.125	3.47	3.97	0.54***
	감사인	170	4.12	1.022	0.078	3.97	4.28	
	회계정보이용자	161	3.58	1.165	0.092	3.40	3.77	
	전체	384	3.84	1.097	0.056	3.73	3.95	

바.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된 감사인 책임(Q1-6)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의 언급이 없다고 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실패가 발생하면 감사인에게 감사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6의 설문내용〉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적정의견) 발행 후 감사대상 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표 7>을 살펴보면, 회계정보이용자와 감사인 간의 평균차이는 0.83로 나타나 기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감사인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대중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Hooks 1991).

〈표 7〉 Q1-6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6	채무제표작성자	53	3.17	1.189	0.163	2.84	3.50	0.83***
	감사인	170	2.16	1.117	0.086	1.99	2.33	
	회계정보이용자	161	2.99	1.191	0.094	2.81	3.18	
	전체	384	2.65	1.236	0.063	2.52	2.77	

사. 기타정보(사업보고서)의 기술여부 적절성에 대한 감사인 책임(Q1-7)

기타정보는 원칙적으로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아니며,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없다. 기타정보의 기술여부 책임과 관련하여 집단 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7의 설문내용〉

감사보고서 전달 후 회사가 공시하는 기타정보(사업보고서)가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 아니다.

<표 8>을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적절하게 기술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인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Q1-7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7	채무제표작성자	53	3.60	1.080	0.148	3.31	3.90	0.69***
	감사인	170	4.17	1.157	0.089	4.00	4.35	
	회계정보이용자	161	3.48	1.285	0.101	3.28	3.68	
	전체	384	3.80	1.244	0.063	3.68	3.93	

아. 업무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Q1-8)

경영진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법규에 따라 수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규위배사항을 예방·적발할 책임도 기업의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있다. 감사인은 법규위반을 예방할 책임은 없으며, 법규위반으로 채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만 있다. 따라서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8의 설문내용〉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가 업무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표 9>를 살펴보면, 회계정보이용자와 감사인 간의 평균차이는 0.95로 나타나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법규준수를 확인할 책임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회계정보이용자는 기업의 법규준수여부를 감사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주인기 등 2005).

〈표 9〉 Q1-8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8	채무제표작성자	53	3.64	1.162	0.160	3.32	3.96	0.95***
	감사인	170	2.75	1.210	0.093	2.57	2.94	
	회계정보이용자	161	3.70	1.178	0.093	3.51	3.88	
	전체	384	3.27	1.274	0.065	3.14	3.40	

자. 적정의견의 표명비율(Q1-9)

감사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적정의견 비율이 미국에 비하여 높은 것은 외부감사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1-9의 설문내용〉

일부 주장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은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95% 이상이 적정의견을 받는 것은 외부감사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10>을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는 0.55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양집단 모두 적정의견비율이 높은 것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집단 간 차이는 발생하고 있다.

〈표 10〉 Q1-9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9	재무제표작성자	53	2.51	1.067	0.147	2.22	2.80	0.55***
	감사인	170	1.98	1.161	0.089	1.80	2.15	
	회계정보이용자	161	2.53	1.304	0.103	2.33	2.74	
	전체	384	2.28	1.239	0.063	2.16	2.41	

차. 수정사항 반영 후 표명된 적정의견(Q1-10)

감사인은 경영진이 최초에 제시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감사인의 수정사항을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감사인은 공표용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집단 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Q1-10의 설문내용〉

다른 주장에 의하면 외부감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최초에 제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오류가 수정·반영되면 100% 적정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

<표 11>의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 평균차이는 0.27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적정의견의 표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회계정보이용자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1〉 Q1-10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10	재무제표작성자	53	4.09	0.815	0.112	3.87	4.32	0.27**
	감사인	170	4.28	0.904	0.069	4.14	4.41	
	회계정보이용자	161	4.01	1.000	0.079	3.86	4.17	
	전체	384	4.14	0.940	0.048	4.05	4.23	

카.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 공시(Q1-11)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에서는 수행된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인 ‘핵심감사항목(key audit matter)’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수행한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집단 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Q1-11의 설문내용〉

감사보고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수행한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표 12>를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에 세부내용이 기재되면 재무제표의 공시내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Sirois et al. 2014). 반면에 감사인은 세부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면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Brasel et al. 2015).

〈표 12〉 Q1-11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1-11	재무제표작성자가	53	3.62	1.023	0.141	3.34	3.90	1.54***
	감사인	170	2.29	1.117	0.086	2.12	2.46	
	회계정보이용자	161	3.83	1.226	0.097	3.64	4.02	
	전체	384	3.12	1.370	0.070	2.98	3.26	

타. 투자정보로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과 활용(Q2-1)

회계감사는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가치를 증진시켜, 재무제표는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감사보고서가 투자정보로서 사전에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기대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2-1의 설문내용〉

투자자인 귀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투자정보로서 사전에 신뢰하고 활용한다.

<표 13>을 살펴보면, 회계정보이용자와 감사인 간에 평균차이는 0.24이며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는 감사의 인증기능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지만,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는 Epstein and Geiger(1994)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13〉 Q2-1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2-1	재무제표작성자	53	3.64	0.811	0.111	3.42	3.87	0.24**
	감사인	170	3.47	1.044	0.080	3.31	3.63	
	회계정보이용자	161	3.71	0.932	0.073	3.57	3.86	
	전체	384	3.60	0.973	0.050	3.50	3.69	

파. 투자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충분성(Q2-2)

감사보고서가 투자정보로 활용되기 위해 그 내용이 충분한 지에 대해 집단 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였다.

〈Q2-2의 설문내용〉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는 투자정보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4>의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간의 평균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기대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을 한 이유는 감사보고서는 과거정보를 담고 있어 미래예측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14〉 Q2-2의 설문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평균차이
						하한	상한	
Q2-2	재무제표작성자	53	3.26	0.812	0.112	3.04	3.49	0.10
	감사인	170	3.22	0.932	0.072	3.08	3.36	
	회계정보이용자	161	3.32	0.959	0.076	3.17	3.47	
	전체	384	3.27	0.927	0.047	3.18	3.36	

IV.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완화방안의 개요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 본질 및 한계의 홍보, 감독당국의 감사보고서 감리확대, 전면 지정방식에서의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확산수준 변경, 결산월의 분산, 감사보고서 기재내용의 확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언론인, 판·검사 등 외부이용자에게 외부감사 본질과 한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②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리를 강화한다.
- ③ 감사인 선임을 자유선임방식(예외적으로 일부 지정)에서 전면 지정방식으로 변경한다.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확산수준을 소극적 확산(검토)에서 합리적 확산(감사)으로 변경한다.
- ⑤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감사받는 기업의 결산기를 분산시킨다.
- ⑥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를 의견문단 아래에 대폭 확충한다.

가. 외부감사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홍보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의 양호여부를 평가하거나 미래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계정보이용자가 감사보고서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업실패를 근거로 감사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사인과 정보이용자 간에 외부감사의 본질과 한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기대차이(expectation gap)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인, 판·검사 등 외부이용자에게 외부감사의 본질과 한계를 홍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외부감사의 한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정보이용자들이 외부감사에 대해 가지는 기대수준이 감사인의 기대수준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한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회계감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 확대와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회계감사에 대해 과대하게 갖고 있는 확산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 감사보고서의 감리확대

이재은과 배길수(2011)는 감사보고서감리가 회계품질(감사품질)을 어느 정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품질관리감리가 감사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감사보고서감리는 이익의 질의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승철과 위준복 2012 ; 정태범 2015).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40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주제별 감리비중을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감사보고서감리의 확대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확대하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에 규정된 감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 전면 지정방식으로의 변경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행 외부감사제도에서는 적절한 회계감사가 불가능하므로 자유선임제도를 지정감사제도로 변경하거나 지정감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회계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정감사대상이 많아지면 감사보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자유선임체제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므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한다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품질의 향상은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기대차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박한순(1996)은 지정대상기업에서는 비보수적인 회계방법에 의한 이익조절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안영균과 이재경(2004)은 감사인 지정이 대상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정옥(2014)에 의하면 감사인의 지정시 기업의 가치관련성은 높아졌다. 정태범과 박희우(2005)는 자유선임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독립성이 약화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강선민과 황인태(2007)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은 시장감시를 의식하여 투명한 회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보고하였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확신수준 변경

외감법에 따라 작성되는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는 합리적 확신(resonable assurance)에 근거하나, 운영실태보고에 감사인의 검토의견은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해서 감사인은 감사(audit)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다.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확대된 절차를 수행하여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수준의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가 아닌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 결산월의 분산

다음의 <표 15>는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정리한 것이다. 결산월별을 살펴보면, 93.8%(12월), 2.0%(3월), 1.5%(6월), 0.8%(9월)으로 12월에 결산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압도적이었다. 결산월이 집중되어 있어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분산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결산월을 변경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즉, 결산월이 특정월에 집중되고 있어 감사인의 업무가 가중되어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월을 분산시킨다면 적절한 감사시간의 투입이 가능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기대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5〉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기업의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상장법인	—	1	25	1	2	18	—	2	9	1	1	1,808	1,868
비상장법인	27	46	456	54	60	336	66	66	184	64	43	20,788	22,190
합 계	27	47	481	55	62	354	66	68	193	65	44	22,596	24,058
구성비(%)	0.1	0.2	2.0	0.2	0.3	1.5	0.3	0.3	0.8	0.3	0.2	93.8	100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2015년 1월 22일)”

바. 감사보고서의 정보 확충

현행 감사보고서는 ‘단문형’ 감사의견만을 표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국제감사보고기준에서는 핵심감사항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감사항목은 외부감사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는 제도이다.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하면 이해관계자는 중요한 재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환경이 개선되어 철저하고 독립적인 감사수행이 가능하고, 내부감사 및 사외이사의 법적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2.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다음의 <표 16>은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표 16>의 Panel A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면지정방식으로 변경, (외부)홍보교육, 감리강화, 감사보고서의 정보확충, 결산기의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확신수준 변경 순으로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압도적으로(33.1%) 현재의 자유선임제도에서 전면적인 지정방식으로 변경해야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시사점이 크다.

<표 16> 외부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Panel A : 전체 표본(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내용(명)	비율(%)	내용(명)	비율(%)	내용(명)	비율(%)	
전면 지정방식 변경(127)	33.1	홍보교육(79)	20.5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63)	16.4	
홍보교육(94)	24.4	결산기 변경(60)	15.6	결산기 변경(59)	15.3	
감리강화(54)	14.1	전면 지정방식 변경(56)	14.5	감리강화(47)	12.2	
감사보고서 정보 확충(41)	10.6	감리강화(52)	13.5	홍보교육(47)	12.2	
결산기 변경(30)	7.8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49)	12.7	전면 지정방식 변경(39)	10.1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23)	5.9	감사보고서 정보 확충(30)	7.8	감사보고서 정보 확충(35)	9.1	
Panel B : 이해관계자 집단별(명, %)						
이해관계자 (총수)	1순위		2순위		3순위	
	내용(명)	비율(%)	내용(명)	비율(%)	내용(명)	비율(%)
회계정보 이용자 (161)	전면 지정방식 변경(38)	23.6	홍보교육(41)	25.4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30)	18.6
	감리강화(31)	19.2	감리강화(34)	21.1	감리강화(27)	16.7
	감사보고서 정보확충(27)	16.7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33)	20.4	전면 지정방식 변경(24)	14.9
재무제표 작성자 (53)	홍보교육(20)	37.7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8)	15.1	결산기 변경(7)	13.2
	감리강화(14)	26.4	결산기 변경(7)	13.2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5)	9.4
	전면 지정방식 변경(10)	18.8	전면 지정방식 변경(6)	11.3	감사보고서 정보 확충(5)	9.4
감사인 (170)	전면 지정방식 변경(79)	46.4	결산기 변경(38)	22.3	결산기 변경(29)	17.1
	홍보교육(53)	31.1	홍보교육(36)	21.1	내부회계관리제도 확신수준 변경(28)	16.4
	감사보고서 정보 확충(10)	5.8	전면 지정방식 변경(33)	19.4	홍보교육(24)	14.1

우리나라는 1982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지정방식에서 자유선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35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유선임방식은 과도한 경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감사품질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행연구(권수영 등 2004 ; 안영균과 이재경 2004 ; 강선민과 황인태 2007 ; 이세용 등 2009)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면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억제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정방식은 감사인

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억제하여 감사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유용성이 높아지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 감사의 기대차이도 감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이 다를 수 있어 <표 16>의 Panel B에서는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Panel B를 살펴보면, 집단별로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정보이용자는 전면 지정방식 변경, 감리강화, 감사보고서의 정보 확충 순으로 응답하였다. 동 집단은 현행 자유선임방식(일부 지정방식)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 감리는 감사시간을 높여 양질의 감사를 가능하게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의 감독기관 감리를 강화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 아래에 감사관련 정보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무제표작성자는 홍보교육, 감리강화, 전면 지정방식 변경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이한 것은 재무제표작성자는 전면 지정방식으로의 변경을 다른 집단에 비해 선호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유선임제도(일부 지정방식)에서는 재무제표작성자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으나, 전면 지정방식으로 변경하면 자신들이 열위에 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감사인은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으로 전면 지정방식으로의 변경을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으며 홍보교육, 감사보고서 정보확충 순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다른 집단과는 달리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완화방안으로 감독기관의 감리강화를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리기관이 감리를 강화하면 징계 등의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회계정보이용자는 결산월 변경을 기대차이 완화방안으로 후순위로 응답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작성자와 감사인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감사받는 기업의 결산월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2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의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어 감사시간의 부족이 감사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회계정보이용자는 기타의견으로 감사보고서에 세무조사 내용의 포함, 감사보고서의 가독성 향상, 기업가치평가 내용 및 절차의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무제표작성자와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감사 기대차이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와 기대차이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 공시와 관련하여 기대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감사인은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을 공시하면 소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에서는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을 핵심감사항목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감사인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므로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핵심감사항목 항목의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관련 법규준수 책임에 대한 기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법규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단지 법규위반으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만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보고서 발행 후 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기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책임의 이해 부족은 회계감사의 기대차이를 증대시키므로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된 감사인 책임에 대한 기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의 언급이 없다고 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가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내지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New ISA 570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을 각각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여, 새로운 감사기준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대차이는 감소할 수 있다.

다섯째, 기타정보의 기술여부 적절성에 대한 감사인책임과 관련하여 기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의 작성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외부감사의 모니터링(예 : 품질관리감리)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개선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현행 자유선임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감사인 지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부분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어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적 유인(예를 들어, 세액공제)을 통해 결산월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가 아닌 약식절차(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적용하는 검토(review)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정식 감사절차(audit)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공헌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감사

인책임, 기타정보(사업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인책임, 감사절차와 판단사항의 세부내용 공시 등에서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다른 국내의 독특한 감사환경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적정의견의 표명비율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집단을 크게 회계정보이용자, 감사인 및 재무제표작성자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에 기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 간 기대차이 분석은 회계감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감독기관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전면적인 감사인지정방식의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변경(검토에서 감사로), 12월 결산법인의 분산 등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한국회계학회 회원과 회계감사를 수강한 학생을 회계정보이용자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학회 회원은 일반적인 회계정보이용자에 비하여 회계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대상을 좀 더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한다면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민 · 황인태. 2007.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발생액의 변화 :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학연구 제32권 제4호 : 115-150.
- 권수영 · 노준화 · 배길수. 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 191-218.
- 금융감독원. 2015. “201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22.).
- 김광윤 · 김한수 · 박성진. 2015.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 실태조사 및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 김정옥. 2014. “감사인 지정기업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209-233.
- 박한순. 1996. “감사인 지정이 경영자의 이익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1권 제3호 : 33-61.
- 서승철 · 위준복. 2012.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이익지속성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281-295.
- 신신웅. 2004. “정부감사의 품질과 기대차이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6집 : 219-239.
- 안영균 · 이재경. 2004. “감사인 지정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89-115.
- 이명곤. 2005. “표준감사보고서 개선과 회계교육의 회계감사 기대차이 축소 효과”. 경영교육논총 제38집 : 461-481.
- 이민재. 2003. “표준감사보고서 문안변화를 통한 재무제표 이용자와 감사인간의 기대차이 축소 방안”. 월간공인회계사 2003년 3월호.
- 이세용 · 정형록 · 노밖은. 2009. “감사인 지정에 대한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 207-240.
- 이재은 · 노준화 · 심영. 2015.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구”.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5호 : 111-147.
- 이재은 · 배길수. 2014. “감사판단의 사후평가지 기대차이, 직무책임 및 사후편견의 영향”.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 1-36.
- 이재은 · 배길수. 2011. “양적, 질적 중요성기준 지침이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31-75.
- 정문기 · 송인만. 2010. “회계감사 기대-성과차이에 대한 한국과 영국 간의 비교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 1-35.
- 정태범 · 박희우. 2005. “감사인 지정 마지막 연도의 감사품질 : 기업의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제14권 특별호 : 129-154.
- 정태범. 2015.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보고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129-154.
- 주인기 · 최 관 · 신용인 · 김석호. 2005.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와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 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 1-25.
- Anderson, J. C., D. J. Loew, and P. M.J. Reckers. 1993. “Evaluation of Auditor Decisions : Hindsight Bias Effects and the Expectation Ga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 711-737.
- Bedard J. C., S. G. Sutton, V. Arnold and J. R. Phillips. 2012. “Another Piece of the “Expectation Gap” : What Do Investors Know About Auditor Involvement with Information in the Annual Report?”. *Current Issues in Auditing* 6(1) : A17-A30.
- Brasel, K., M. Doxey, J. Grenier, and A. Reffett. 2015. “Risk Disclosure Preceding Negative Outcomes : The Effects of Reporting Critical Audit Matters on Judgments of Auditor Liability”. www.ssrn.com Working Paper : 1-42.
-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CICA). 1988. “Report of the Commission to Study the Public’s Expectation of Audits”. Commission’s Report (June). available at the website of : <http://wamacdonald.com/wp-content/uploads/2014/07/Macdonald-Commission-Report-June-1988.pdf>.
- Cohen Commission(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1978. *Report :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New York : AICPA 40 : 342.
- Epstein, M. J., and M. A. Geiger. 1994. “Investors Views of Audit Assurance : Recent Evidence of the Expectation Gap”. *Journal of Accountancy* 177(1) : 60-66.
- Hooks, K. L. 1991. “Professionalism and Self Interest : A Critical View of the Expectations Gap”.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3(2) : 109-136.
- Humphrey, C., P. Moizer, and S. Turley. 1992. “The Audit Expectations Gap—Plus CA Change, Plus C’est La Meme Chose?”,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3(2) : 137-161.
- Humphrey, C., P. Moizer, and S. Turley. 1993. “The Audit Expectations Gap in Britain : An Empirical Investigation”,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3(91A) : 395-411.
- Kelly, A. S., and L. C. Mohrweis. 1989. “Bankers’ and Investors’ Perceptions of the Auditor’s Role in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 The Impact of SAS No. 58. Auditing”. *A Journal of Auditing Practice & Theory* 9(1) : 87-97.
- Liggio, C.D. 1974. The Expectation Gap : The Accountant’s Waterloo.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3(3) : 27-44.

- Lin, Z. J. 2004. "Auditor's Responsibility and Independence : Evidence from China".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7 : 167–190.
- McEnroe, J. E., and S. C. Martens. 2001. "Auditors' and Investors' Perceptions of the 'Expectation Gap'". *Accounting Horizons* 15(4) : 345–358.
- Mills, S. K., and M. S. Bettner. 1992. "Ritual and Conflict in the Audit Profess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3(2) : 185–200.
- Miller, J. R., S. A. Reed, and R. H. Strawser. 1990. "The New Auditor's Report : Will It Close the Expectations Gap in Communications?". *The CPA Journal* 60(5) : 68–72.
- Porter, B. 1993. "An Empirical Study of the Audit Expectation - Performance Gap".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4(93) : 49–68.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2011a. Concept Release on Possible Revisions To PCAOB Standards Related To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Amendments To PCAOB Standards. Available at : http://pcaobus.org/Rules/Rulemaking/Docket034/Concept_Release.pdf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2011b. PCAOB Roundtable : Auditor's Reporting Model. Available at : http://pcaobus.org/Rules/Rulemaking/Docket034/Briefing_Paper.pdf
- Sikka, P., A. Puxty, H. Willmott, and C. Cooper. 1998. "The Impossibility of Eliminating the Expectations Gap : Some Theory and Evidence".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9(3) : 299–330.
- Sirois, L. P., J. Bedard, and P. Bera. 2014. "The Informational Value of Key Audit Matters in the Auditor's Report : Evidence from an Eye-Tracking Study". www.ssrn.com Working Paper : 1–56.

A Study of the Expectation Gap for the External Audit and its Mitigating Solutions

Kim, Kwang-Yoon* · Park, Sung Jin** · Kim, Han Soo***

〈Abstract〉

This study surveys the expectation gap for the external audit and proposes the solutions to mitigate the expectation gap. The study is conducted through a survey via online and offline, whose subjects are members of Listed Companies Association(KLCA and KOSDAQ) and KAA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students,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expectation gaps between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and external auditors for the external audit. Meanwhile,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as a way to mitigate the expectation gap between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and external auditors for the external audit.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fic local guidelines when selecting a key audit matters. Second, the audit report should be written clearly so tha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can surely recogniz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and the auditor, and there is a need to educate it to the ordinary people.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expectation gap relating to other information, the audit report should include that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business report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is attributed to the management. Fourth, there is a need to improve audit quality through enhanced monitoring of the external auditors(eg. audit reports supervision, audit quality control inspection). Fifth, as the current way of contracting audit service can hinder audit quality by underm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designation of auditors by SF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ixth, the confidence level of review opinion by auditors on the current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s a limit to collect sufficient and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Thus, there is a need to apply auditing procedures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rather than review on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disperse December settlement corporation through attracting institutional incentives(for example, tax credi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long-form audit report to describe as a separate paragraph what has been deemed significant or key audit matters(KAM) in the external audit process.

〈Key words〉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Reporting), Key Audit Matters(KAM), External audit, Expectation gap, Audit qual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jou University, kimkyn@ajou.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gjinpark@sungshin.ac.kr,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kimhansoo@kgu.ac.kr, Co-author.